

대전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10042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케이 담당변호사 이영주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HX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웅, 이재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김태근, 김민수

변론 종결 2020. 6. 17.

판결 선고 2020. 8. 26.

제 1 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2. 19. 선고 2018가단5517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해당 'L 입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해당 't 입금시기'란 기재 입금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 중 일부1)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서산시 I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구분소유자였던 사람들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8. 19.경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IB(이하 'IB'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317,8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와 I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도시가스 및 개별난방 전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 263,560,000원(전체 공사대금의 20%)은 계약이행증권 제출시에 지급하고, 1차 중도금은 전체 공사대금의 60%인 중도금 790,6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세대별로 수금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은 전체 공정의 70% 이상 진행된 시점에 지급하고, 잔금 263,560,000원(전체 공사대금의 20%)은 하자보수이행증권 제출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8. 26. 피고 회사와 IB에 계약금으로 각 131,78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의 전유부분 공사대금의 지급

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8. 2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유부분의 공사대금(16평형 782,000원, 20평형 783,000원, 24평형 794,000원, 현금으로 일시불 납부할 경우 2만 원할인)은 해당 세대별로 피고 회사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일시불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2016. 9. 30.까지, 3개월 분할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2016. 9.부터 2016. 11.까지 매달 20일에 각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위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원고 A 등은 별지 3 계산내역 해당 '1 입금금액'란 및 '3 입금일자'란 기재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해당 'L 입금액'란 및 't 입금시기'란 기재와 같이 전유부분의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이 사건 공사의 중단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IC이 입주자들의 3/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6.10. 7.경 충청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공사를 위법하게 진행하였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감사를 요청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2)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위 감사요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12. 22.경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년도 장기수선계획을 의결하지 아니하고 2016년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공사계약의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과는 달리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IB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131,78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주무부서인 서산시 건축과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또는 주의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IC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관련 소송의 경과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변경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IC, ID, IE은 2017. 4. 2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고, 이 사건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효력정지 및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 1. 8. '이 사건 공사계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소명되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회사와 IB(이하 '피고 회사 등'이라 한다) 사이의 법률적 분쟁이 심화되어 채권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카합5036).

2)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였던 회장 IF의 임기가 2018. 1. 31. 만료되었고, ID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되어 2018. 2. 1. 그 임기가 시작되었다.

3) 피고 회사 등은 2018. 8. 10.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및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피고 회사 등이 입은 자재보관비 등의 손해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합5116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도 같은 날 '이 사건 공사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 등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한 계약금에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을 상계한 나머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8가합51173, 이하 피고 회사 등이 제기한 본소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반소를 통틀어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4)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20. 6. 4. '이 사건 공사계약은 집합건물법이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 흠결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유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법령이 정한 결의요건을 흠결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 등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채권과 피고 회사 등의 채권이 상계되어 피고 회사 등의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채권은 일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등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피고 회사 등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 사건 관련 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0나12705, 127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 9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중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당사자인 이 사건 공사계약과는 별개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원고들이 계약당사자인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서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권을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된 공사대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도급인)와 피고 회사 및 IB(공동수급인)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범위에 전유부분의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사건 공사계약 제6조 참조)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② 원고들은 '1차 중도금 중 일부를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피고 회사에 직접지급해야 한다'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3조 제2항의 내용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안내받은 후 해당 공사대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 중 일부를 제3자의 변제(민법 제469조 제1항 본문)의 방식으로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들과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자치 의결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전유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이 사건 공사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공사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수 없다.

④ 이 사건 공사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계약당사자인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회사 등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전유부분의 기성고 공사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해당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인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회사 등에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판사 박효송, 판사 신옥영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별지 1]

원고들 명단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AR

45. AS

46. AT

47. AU

48. AV

49. AW

50. AX

51. AY

52. 망 AZ의 소송수계인 IG

53. BA

54. BB

55. BC²⁾

56. BD

57. BE

58. BF

59. BG

60. BH

2)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2019. 1. 10.자)에는 원고 BC의 주소가 '서산시 서북구 Ⅲ아파트 Ⅲ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서산시'는 '천안시'의 오타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기재한다.

61. BI

62. BJ

63. BK

64. BL

65. BM

66. BN

67. BO

68. BP

69. BQ

70. BR

71. BS

72. BT

73. BU

74. BV

75. BW

76. BX

77. BY

78. BZ

79. CA

80. CB

81. CC

82. CD

83. CE

84. CF

85. CG

86. CH

87. CI

88. CJ

89. CK

90. CL

91. CM

92. CN

93. CO

94. CP

95. CQ

96. CR

97. CS

98. CT

99. CU

100. CV

101. CW

102. CX

103. CY

104. CZ

105. DA

106. DB

107. DC

108. DD

109. DE

110. DF

111. DG

112. DH

113. DI

114. DJ

115. DK

116. HY

117. DM

118. DN

119. DO

120. DP

121. DQ

122. DR

123. DS

124. DT

125. DU

126. DV

127. DW

128. DX

129. DY

130. DZ

131. EA

132. EB

133. EC

134. ED

135. EE

136. EF

137. EG

138. EH

139. EI

140. EJ

141. EK

142. EL

143. EM

144. EN

145. EO

146. EP

147. EQ

148. ER

149. ES

150. ET

151. EU

152. EV

153. EW

154. EX

155. EY

156. EZ

157. FA

158. FB

159. FC

160. FD

161. FE

162. FF

163. FG

164. FH

165. FI

166. FJ

167. FK

168. FL

169. FM

170. FN

171. FO

172. FP

173. FQ

174. FR

175. FS

176. FT

177. FU

178. FV

179. FW

180. FX

181. FY

182. FZ

183. GA

184. GB

185. GC

186. GD

187. GE

188. GF

189. GG

190. GH

191. GI

192. GJ

193. GK

194. GL

195. GM

196. GN

197. GO

198. GP

199. GQ

200. GR

201. GS

202. GT

203. GU

204. GV

205. GW

206. GX

207. GY

208. GZ

209. HA

210. HB

211. HC

212. HD

213. HE

214. HF

215. HG

216. HH

217. HI

218. HJ

219. HK

220. HL

221. HM

222. HN

223. HO

224. HP

225. HQ

226. HR

227. HS

228. HT

229. HU

230. HV

231. HW

끝.

[별지 2]

목 록

순번	㉠ 원고	실납부자	㉡입금액	㉢ 입금시기	서종	판계/비고
		공사비납 부자명단 (갑제13 호증)				
1			392,358	19. 5. 31	갑제9호증의 1	
2			264,000	16. 9. 23.	갑제9호증의 2	
3			774,000	16. 9. 21.	갑제9호증의 3	
4			558,670	20. 1. 14.	갑제9호증의 4	
5			774,000	16. 9. 27.	갑제9호증의 5	자 (갑10-1)
6			774,000	16. 9. 19.	갑제9호증의 6	
7			774,000	16. 9. 20.	갑제9호증의 7	부 (갑10-2)
8			264,000	16. 9. 30.	갑제9호증의 8	
9			774,000	16. 9. 21.	갑제13호증	
10			26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9	
11			77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10	
12			774,000	16. 9. 24.	갑제9호증의 11	

13			264,000	16. 9. 21.	갑제9호증의 12	배우자 (갑10-3)
14			774,000	16. 9. 22.	갑제9호증의 13	
15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14	
16			774,000	16. 9. 23.	갑제9호증의 15	자 (갑10-4)
17			77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16	모 (갑10-5)
18			774,000	16. 9. 27.	갑제9호증의 17	
19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18	
20			264,000	16. 9. 22.	갑제9호증의 19	
21			600,000	16. 9. 28.	갑제9호증의 20	자 (갑10-6)
22			774,000	16. 9. 21.	갑제9호증의 21	
23			774,000	16. 9. 27.	갑제9호증의 22	
24			774,000	16. 9. 20.	갑제9호증의 23	배우자 (갑10-7)
25			774,000	16. 9. 29.	갑제9호증의 24	
26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25	
27			774,000	16. 9. 29.	갑제9호증의 26	자 (갑10-8)
28			774,000	16. 9. 21.	갑제9호증의 27	배우자 (갑10-9)
29			264,000	16. 9. 27.	갑제9호증의 28	
30			774,000	16. 9. 20.	갑제13호증	배우자

					(갑10-10)
31		774,000	16. 9. 20.	갑제9호증의 29	
32		774,000	16. 9. 21.	갑제9호증의 30	
33		774,000	16. 9. 21.	갑제9호증의 31	
34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32	
35		774,000	16. 9. 25.	갑제9호증의 33	
36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34	
37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35	모 (갑10-11)
38		774,000	16. 9. 22.	갑제9호증의 36	
39		402,597	19. 7. 1.	갑제9호증의 37	
40		77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38	
41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39	
42		2,296,000	16. 9. 24.	갑제9호증의 40, 41, 42	
43		774,000	16. 9. 23.	갑제9호증의 43	부 (갑10-12)
44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44	배우자 (갑10-13)
45		774,000	16. 9. 24.	갑제9호증의 45	
46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46	부 (갑10-14)
47		762,000	16. 9. 22.	갑제9호증의 47	
48		762,000	16. 9. 29.	갑제9호증의 48	

49		260,000	16. 9. 20.	갑제9호증의 49	
50		762,000	16. 9. 27.	갑제9호증의 50	
51		388,184	19. 5. 31.	갑제9호증의 51	
52		1,241,000	16. 9. 26.	갑제9호증의 52	등재 (갑10-15)
53		762,000	16. 9. 30.	갑제9호증의 53	
54		762,000	16. 9. 30.	갑제9호증의 54	
55		762,000	16. 9. 27.	갑제9호증의 55	
56		762,000	16. 9. 27.	갑제9호증의 56	
57		762,000	16. 9. 29.	갑제9호증의 57	배우자 (갑10-16)
58		762,000	16. 9. 26.	갑제9호증의 58	
59		762,000	16. 9. 26.	갑제9호증의 59	
60		2,286,000	16. 9. 27.	갑제9호증의 60, 61	① 호 ③ 호
61		2,286,000	16. 10. 6.	갑제9호증의 62, 63, 64	① 호 ② 호 ③ 호
62		260,000	16. 9. 24.	갑제9호증의 65	

63		862,000	16. 9. 29.	갑제9호증의 66	각매 (갑10-17)
64		762,000	16. 9. 28.	갑제9호증의 67	
65		260,000	16. 9. 26.	갑제9호증의 68	
66		762,000	16. 9. 21.	갑제9호증의 69	
67		762,000	16. 9. 27.	갑제9호증의 70	
68		774,000	16. 9. 21.	갑제13호	
69		264,000	16. 9. 27.	갑제9호증의 71	
70		387,000 387,000	16. 9. 30.	갑제13호증	
71		774,000	16. 9. 21.	갑제9호증의 72	
72		774,000	16. 9. 23.	갑제9호증의 73	자 (갑10-18)
73		774,000	16. 9. 27.	갑제9호증의 74	
74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75	
75		774,000	16. 9. 19.	갑제9호증의 76	
76		77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77	
77		26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78	
78		774,000	16. 9. 24.	갑제9호증의 79	
79		774,000	16. 9. 21.	갑제9호증의 80	자 (갑10-19)

80		774,000	16. 9. 29.	갑제9호증의 81	
81		774,000	16. 9. 24.	갑제9호증의 82	
82		26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83	
83		774,000	16. 9. 27.	갑제9호증의 84	
84		77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85	
85		26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86	
86		774,000	16. 9. 27.	갑제9호증의 87	
87		774,000	16. 9. 27.	갑제9호증의 88	자 (갑10-20)
88		774,000	16. 9. 21.	갑제9호증의 89	
89		774,000	16. 9. 22.	갑제9호증의 90	
90		774,000	16. 9. 21.	갑제9호증의 91	
91		77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92	
92		774,000	16. 9. 27.	갑제9호증의 93	
93		383,088	19. 4. 30.	갑제9호증의 94	부 (갑10-21)
94		264,000	16. 9. 23.	갑제9호증의 95	배우자 (갑10-22)
95		774,000	16. 9. 19.	갑제9호증의 96	
96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97	
97		774,000	16. 9. 25.	갑제13호증	

98		774,000	16. 9. 22.	갑제9호증의 98	
99		774,000	16. 9. 20.	갑제9호증의 99	
100		77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100	
101		774,000	16. 9. 29.	갑제9호증의 101	배우자 (갑10-23)
102		774,000	16. 9. 30.	갑제9호증의 102	
103		774,000	16. 9. 19.	갑제9호증의 103	
104		774,000	16. 9. 20.	갑제9호증의 104	배우자 (갑10-24)
105		774,000	16. 9. 20.	갑제9호증의 105	자 (갑10-25)
106		9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106	배우자 (갑10-26)
107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107	
108		774,000	16. 9. 21.	갑제9호증의 108	부 (갑10-27)
109		774,000	16. 9. 22.	갑제9호증의 109	형제 (갑10-28)
110		774,000	16. 9. 23.	갑제9호증의 110	배우자 (갑10-29)
111		774,000	16. 9. 23.	갑제9호증의 111	배우자 (갑10-30)
112		77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112	자 (갑10-31)
113		774,000	16. 9. 26.	갑제13호증	배우자 (갑10-32)
114		774,000	16. 9. 23.	갑제9호증의 113	
115		77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114	배우자 (갑10-33)

116			762,000	16. 9. 19.	갑제9호증의 115	
117			762,000	16. 9. 23.	갑제9호증의 116	
118			762,000	16. 9. 30.	갑제9호증의 117	자 (갑10-34)
119			260,000	16. 9. 19.	갑제13호증	자 (갑10-35)
120			762,000	16. 9. 22.	갑제9호증의 118	자 (갑10-36)
121			260,000	16. 9. 26.	갑제9호증의 119	
122			378,059	19. 4. 30.	갑제9호증의 120	배우자 (갑10-37)
123			260,000	16. 10. 4.	갑제9호증의 121	배우자 (갑10-38)
124			762,000	16. 9. 19.	갑제9호증의 122	
125			762,000	16. 9. 20.	갑제9호증의 123	
126			762,000	16. 9. 23.	갑제9호증의 124	
127			762,000	16. 9. 26.	갑제9호증의 125	
128			762,000	16. 9. 26.	갑제9호증의 126	
129			762,000	16. 10. 4.	갑제9호증의 127	
130			762,000	16. 9. 27.	갑제9호증의 128	
131			774,000	16. 9. 22.	갑제9호증의 129	
132			403,551	19. 7. 1.	갑제9호증의 130	

133			774,000	16. 9. 27.	갑제9호증의 131	
134			774,000	16. 9. 21.	갑제9호증의 132	
135			774,000	16. 9. 21.	갑제9호증의 133	남매 (갑10-39)
136			774,000	16. 9. 23.	갑제9호증의 134	
137			392,737	19. 5. 31.	갑제13호증	
138			774,000	16. 9. 20.	갑제9호증의 135	
139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136	무 (갑10-40)
140			774,000	16. 9. 22.	갑제9호증의 137	
141			264,000	16. 9. 21.	갑제13호증	
142			774,000	16. 9. 20.	갑제9호증의 138	배우자 (갑10-41)
143			77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139	
144			774,000	16. 9. 24.	갑제9호증의 140	배우자 (갑10-42)
145			774,000	16. 9. 21.	갑제9호증의 141	
146			26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142	배우자 (갑10-43)

147			382,982	19. 4. 30.	갑제9호증의 143	
148			383,405	19. 4. 30.	갑제9호증의 144	
149			774,000	16. 9. 30.	갑제9호증의 145	
150			774,000	16. 9. 29.	갑제9호증의 146	배우자 (갑10-44)
151			774,000	16. 9. 27.	갑제9호증의 147	
152			77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148	
153			774,000	16. 9. 23.	갑제9호증의 149	
154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150	자 (갑10-45)
155			264,000	16. 9. 27.	갑제9호증의 151	
156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152	
157			130,641	19. 4. 30.	갑제13호증	부 (갑10-46)
158			774,000	16. 9. 23.	갑제9호증의 153	배우자 (갑10-47)
159			77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154	자 (갑10-48)
160			974,000	16. 9. 19.	갑제9호증의	

					155, 156	
161			774,000	15. 9. 20.	갑제9호증의 157	
162			264,000	15. 9. 29.	갑제9호증의 158	
163			264,000	15. 9. 26.	갑제13호증	
164			774,000	15. 9. 22.	갑제9호증의 159	
165			774,000	15. 9. 28.	갑제9호증의 160	
166			774,000	15. 9. 24.	갑제9호증의 161	
167			774,000	15. 9. 20.	갑제9호증의 162	배우자 (갑10-49)
168			774,000	15. 9. 20.	갑제9호증의 163	
169			774,000	15. 9. 26.	갑제9호증의 164	
170			774,000	15. 9. 24.	갑제9호증의 165	
171			264,000	15. 9. 22.	갑제9호증의 166	
172			383,406	19. 4. 30.	갑제9호증의 167	자 (갑10-50)
173			774,000	15. 9. 22.	갑제9호증의 168	

174			774,000	16. 9. 19.	감제9호증의 169	
175			383,406	19. 4. 30.	감제9호증의 170	
176			774,000	16. 9. 23.	감제9호증의 171	배우자
177			774,000	16. 9. 21.	감제9호증의 172	
178			774,000	16. 9. 27.	감제9호증의 173	모 (갑10-51)
179			383,512	19. 4. 30.	감제9호증의 174	
180			774,000	16. 9. 30.	감제9호증의 175	
181			774,000	16. 9. 23.	감제9호증의 176	
182			774,000	16. 9. 22.	감제9호증의 177	
183			774,000	16. 9. 19.	감제9호증의 178	
184			774,000	16. 9. 28.	감제9호증의 179	
185			774,000	16. 9. 20.	감제9호증의 180	
186			774,000	16. 9. 19.	감제9호증의 181	
187			774,000	16. 9. 20.	감제9호증의 182	

188			762,000	16. 9. 27.	갑제9호증의 183 배우자
189			397,683	19. 7. 1.	갑제9호증의 184 부() 사망 (갑10-52)
190			762,000	16. 9. 23.	갑제9호증의 185
191			762,000	16. 9. 29.	갑제9호증의 186
192			762,000	16. 9. 22.	갑제9호증의 187
193			762,000	16. 9. 28.	갑제9호증의 188
194			762,000	16. 9. 26.	갑제9호증의 189
195			1,536,000	16. 9. 30.	갑제9호증의 190, 191
196			762,000	16. 9. 30.	갑제9호증의 192
197			377,433	19. 4. 30.	갑제9호증의 193
198			762,000	16. 9. 27.	갑제9호증의 194 자 (갑10-53)
199			762,000	16. 9. 30.	갑제13호증

200		1,536,000	16. 9. 26.	감제9호증의 195	① 호 ② 호
201		391,358	19. 5. 31.	감제9호증의 196	
202		774,000	16. 9. 28.	감제9호증의 197	차 (갑10-54)
203		774,000	16. 9. 26.	감제9호증의 198	배우자 (갑10-55)
204		774,000	16. 9. 23.	감제9호증의 199	배우자 (갑10-56)
205		774,000	16. 9. 19.	감제9호증의 200	
206		264,000	16. 9. 23.	감제9호증의 201	
207		774,000	16. 9. 19.	감제9호증의 202	
208		774,000	16. 9. 27.	감제9호증의 203	
209		774,000	16. 9. 27.	감제9호증의 204	
210		774,000	16. 9. 23.	감제9호증의 205	
211		774,000	16. 9. 28.	감제9호증의 206	
212		774,000	16. 9. 27.	감제9호증의	

213		774,000	16. 9. 27.	갑제9호증의 208	
214		264,000	16. 9. 22.	갑제9호증의 209	
215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210	
216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211	
217		774,000	16. 9. 23.	갑제9호증의 212	
218		774,000	16. 9. 20.	갑제9호증의 213	
219		774,000	16. 9. 29.	갑제9호증의 214	
220		77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215	
221		774,000	16. 9. 27.	갑제9호증의 216	
222		774,000	16. 9. 29.	갑제9호증의 217	배우자 (갑10-57)
223		774,000	16. 9. 29.	갑제9호증의 218	
224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219	
225		77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220	
226		774,000	16. 9. 26.	갑제9호증의 221	
227		774,000	16. 10. 10.	갑제9호증의 222	
228		774,000	16. 9. 28.	갑제9호증의 223	
229		264,000	16. 9. 20.	갑제9호증의 224	
230		264,000	16. 9. 21.	갑제9호증의 225	
231		774,000	16. 9. 22.	갑제9호증의 226	

[별지 3]

원고 A 등의 청구금액 계산내역

원고순번	원고명	등·후수	㉑입금금액	㉒환불금액	㉓입금일자	㉔환불일자	㉕환불일까지 기발생 이자	㉖환불금-이 자 (㉓-㉔)	㉗청구금액=입 금금액-(환불 금-이자) (㉑-㉖)
1			774,000	542,000	16.10.11.	19.5.31.	159,358	381,642	392,358
4			774,000	542,000	16.9.29.	20.1.14.	326,670	215,330	558,670
39			774,000	542,000	16.9.28.	19.7.1.	170,597	371,403	402,597
51			762,000	533,000	16.9.19.	19.5.31.	159,184	373,816	388,184
93			774,000	542,000	16.9.28.	19.4.30.	151,066	390,912	383,066
122			762,000	533,000	16.9.23.	19.4.30.	149,059	383,941	378,059
132			774,000	542,000	16.9.19.	19.7.1.	171,551	370,449	403,551
137			774,000	542,000	16.9.28.	19.5.31.	160,737	381,263	392,737
147			774,000	542,000	16.9.27.	19.4.30.	150,982	391,018	382,982
148			774,000	542,000	16.9.23.	19.4.30.	151,406	390,594	383,406
157			264,000	195,000	16.9.23.	19.4.30.	51,641	133,359	130,641
172			774,000	542,000	16.9.23.	19.4.30.	151,406	390,594	383,406
175			774,000	542,000	16.9.23.	19.4.30.	151,406	390,594	383,406
179			774,000	542,000	16.9.22.	19.4.30.	151,512	390,488	383,512
189			762,000	533,000	16.9.21.	19.7.1.	168,683	364,317	397,683
197			762,000	533,000	16.9.29.	19.4.30.	148,433	384,567	377,433
201			774,000	542,000	16.10.11.	19.5.31.	159,358	382,642	391,358

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2020. 3.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반환받은 원고 A, D, AM, AY, CO, DR, EB, EG, EQ, ER, FA, FP, FS, FW, GG, GO, GS(별지 2 목록 순번 1, 4, 39, 51, 93, 122,

132, 137, 147, 148, 157, 172, 175, 179, 189, 197, 201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하'원고 A 등'이라 한다)의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위 변경신청서의 별지 2에는 원고 HE, HF, HG, HH, HI, HJ, HK, HL, HM,HN, HO, HP, HQ, HR, HS, HT, HU, HV, HW(별지 목록 순번 213 내지 231에 해당하는 원고들)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변경신청서에 따라 청구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위 변경신청서의 별지 3 계산내역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청구를 변경할 의사였음에도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